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총	무	과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허민근 의원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허민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허민근 의원(1인)

찬 성 자 : 김민성·김영태·김정도·이명희
이상호·장미경 의원(6인)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교육·상담·생활편의·의료 등 실질적 정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정의(안 제2조)
-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단체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2) 「지방자치법」 제13조

3)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부서검토: 총무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2.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 사업
3.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언어·기초 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5.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비밀엄수의무 등) 관계 공무원 등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 나. (생략)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 차. (생략)

3. ~ 7. (생략)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총무과

조 례 명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p>□ 검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법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p>□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정의(안 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지원단체 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p>□ 검토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교육·상담·의료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확대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에 기여○ 다만, 조례 전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 시행되던 북한이탈주민 민·관 협력 및 자원 발굴을 위한 협의회가 중단 ⇒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에 재 위임 규정이 반영되는 시기에 규칙으로 제정 <p>□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효과: 북한이탈주민 가정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가 늘어남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부분)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에 경비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현재로서는 지원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일 뿐이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향후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며, 예산의 소요는 예상되나 기술적인 추계는 어려움

4. 작성자

- 총무과 자치행정팀 김진호(☎054-480-6768)